

의안번호	2205323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4. 11. 19.
추계번호	24C479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3조의4 (구직지원금) 등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 1.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재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해보상부담급여 준비금으로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3조의4 (구직지원금)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및 폐지(폐교)로 인해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3)을 통해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시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간 지급한 후 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

정하는 대신, 동 개정안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구직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 관련 규정을 준용
- *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하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¹⁾을 기초일액으로 함(「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5항 준용)
- * 구직지원금 지급액은 수급자격자 기초일액의 60%로 설정(「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준용)
- * 구직지원금의 수급기간은 12개월의 기간에 공단이 퇴직을 확인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퇴직 인정일로부터 소정급여일수²⁾ 한도 내에서 인정(「고용보험법」 제48조 등 준용)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구직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수 및 지원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의 수와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등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알 수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하도록 규정

2) (참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